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음부담금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으나, 상이한 체납기간에 대해 동일한 가산금이 징수되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체납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체납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부과하도록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372호, '23.4.18. 공포, '23.10.19. 시행)됨에 따라 체납된 소음부담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소음부담금 체납 시 추가 가산금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체납기간 1일당 체납금액의 10만분의 22로 정함(안 제10조의 2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생 략

다. 향후계획 : 생 략

라. 기 타 : 1) 신 · 구조문대비표 별첨

2) 입법예고 추진 예정(2023. 8. 14. ~ 9. 24.)

3) 행정규제 :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

- 규제 신설 · 폐지 등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가산금의 이자율) 법 제17조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이란 채납기간 1일당 채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2(가산금의 이자율) 법</u> <u>제17조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</u> <u>정하는 이자율”이란 채납기간 1</u> <u>일당 채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</u> <u>22의 율을 말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341